

문서번호	도로환경처-9521
보존기간	운영구
결재일자	2017.11.29.
공개여부	공개

팀장	도로환경처장	도로관리본부장		
협 조	과장			

소형 살포기 불용처리 계획

2017.

소형살포기 불용처리 계획

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된 소형 살포기를 관련규정에 의거 불용처리 하고자 함.

I 관련 규정 및 근거

○ 공단 물품관리규정 제29조(불용결정 기준)

- ⑥항 : 수리 또는 개조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

○ 공단 회계규정 제81조(유형자산의 처분결정)

- ①항 : 유형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유형자산에 대하여 불용 결정을 하여야 한다.
- ②항 : 유형자산의 불용 결정을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다만 이사회는 일정한 금액을 정하여 이사장에게 위임을 할 수 있다.

○ 물품관리규정 제30조(불용결정의 절차) 제1항 단서조항

- 취득단가 500만원 이상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운반구등의 불용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.

○ 소형살포기 구매계획(도로환경처 - 8449 : 2017.10.26)

- 구매수량 : 6대(소요예산 50,961천원) - 예산과목 : 대행사업예수금(예산외자금)

II 살포기 현황

○ 살포기 보유 현황

구 분	계	2009	2010	2011	2013	2014	2015	2016	2017
대 형	23대	2	13	3		3		1	1
중 형	8대		4		1				3
소 형	34대	6	4	2	5		7	4	6 (2017년 10월구매)

○ 현실태 및 문제점

- 내구연한(8년)이 경과한 2009년식 살포기 총 8대(대형2,소형6)중 **소형살포기 6대가 노후화로 정상작동 불가(수리 및 정비 비용 과다소요)**

○ 조치 사항

- 2017/2018년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해 2017년 10월 대행사업비(예산외자금)로 소형살포기 6대 긴급 구매(소요예산 : 50,961천원)

○ 향후 계획 : 소형살포기 6대(2009년식) 불용 처리

Ⅲ 살포기 불용계획

○ 대 상 : 소형살포기 6대

구 분	규 격	불용대수	구매년도	구매가격	용 도	보유년수	내 용연수
소형살포기	1톤	6	2009. 1	대당 9,000천원	제설용	9년	8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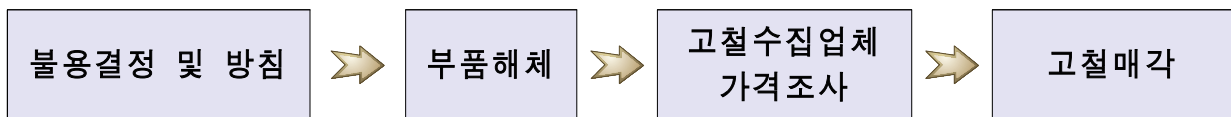


불용대상 소형살포기 사진

○ 처리방법 : 고철매각(물품관리규정 제32조 : 불용품의 해체)

- 사용 가능한 부품(엔진, 배터리 등)은 해체후 예비 부품으로 확보
- 나머지는 매각

○ 처리절차



○ 행정사항

- 매각결과 보고(도로환경처 ➡ 총무처)
- 매각대금은 공단회계규정에 의거 접수입 처리

붙임 : 소형살포기 구매계획 1부 - 끝 -